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9. 8 선고 2021가단370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조종만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2. 4. 접수 제5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4. 30.부터 2020. 4. 24.까지 B와 사이에 B이 C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3,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B은 2020. 4. 24. 원금 연체 등으로 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는 2020. 9. 8. C은행에 10,081,284원을 대위변제하고, 채권보전 등의 비용으로 216,68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등 구상금 채권 10,353,854원(= 대위변제 10,081,284원 + 채권보전 비용 216,680원 + 미수추가보증료 55,890원)을 가지고 있다.

라. B은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2개월 전 강제집행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0. 2. 4. 그의 형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피고와 B 사이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이고, 피고와 B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판사 이아영

